

www.i-sh.co.kr

영구임대주택 예비입주자 모집공고

2018. 03. 16.

SH 서울주택도시공사





차례

1. 공급일정 및 세부절차	3
2. 주택형별 공급계획 및 임대조건	4
3. 신청자격	7
4. 예비입주자 선정방법	9
5. 신청서류	11
6. 주택 소유여부 확인 방법 및 판정기준	14
7. 유의사항	15
8. 사회보장시스템을 통한 소득·자산 산정방법, 소득항목 설명 및 자료 출처	17
9. 2017년 모집공고 당락점수	21
10. 문의처	22

서울주택도시공사

영구임대주택 예비입주자 모집공고

모집 신청과 관련하여 중요한 사항이오니 반드시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 영구임대주택 신청자격은 **모집공고일(2018.03.16)** 현재 **서울특별시**에 거주하는 무주택세대 구성원 중 영구임대아파트 입주자 자격자에 한합니다.
- **예비입주자 모집 공고일**은 2018.03.16(금)이며, 이는 입주자격(무주택세대구성원) 및 배점 등의 판단 기준일이 됩니다.
- **1세대(무주택세대구성원 전원) 1주택만 신청 가능하며, 중복 신청하는 경우 전부 무효처리합니다.** (신청을 원하시는 1개 단지 1개 평형만 신청 가능합니다.)
- **LH와 서울주택도시공사(SH)의 영구임대주택 공고 중 1호에만 신청 가능합니다.**(중복신청불가)
- **거주지관할 동 주민센터**에서 신청기간에만 접수 가능합니다.
- 금회 모집의 예비입주자로 선정될 경우 입주 순번은 기존대기자의 후 순번이 되며, 공사 발생시 예비입주자 순번에 따라 계약을 체결하므로, 아파트 입주까지는 상당기간이 소요(30㎡~39㎡는 3년 이상)될 수 있습니다.

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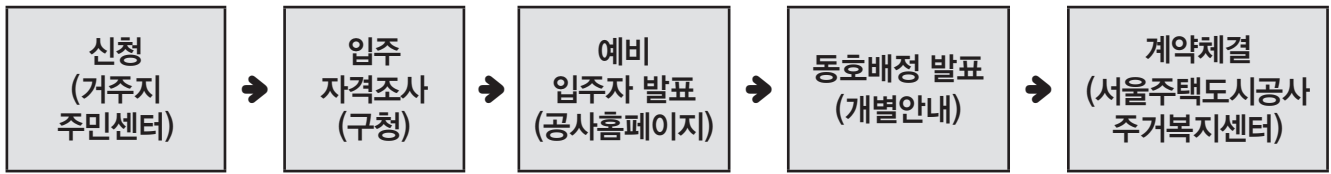
공급일정 및 세부절차

◎ 공급일정

신청기간	신청장소	입주대상자 발표
2018.03.26. ~ 2018.03.30.	거주지 동 주민센터	2018.07.06. 17:00

※ 예비입주자 당첨자 발표는 서울주택도시공사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하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콜센터 (☎ 1600-3456)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입주자 선정 세부절차



2

주택형별 공급계획 및 임대조건

◎ 공급계획 및 임대조건

구별	단지명	단지 규모 (호)	전용 면적 (㎡)	예비입주자 모집호수			기존 대가자	임대가격(원)				주소 (연락처)
				계	일반	무장애		수급자 기준		수급자 이외의 기준		
								임대 보증금	월임대료	임대 보증금	월임대료	
노원	하계 5	640	33	20	20	0	26	2,000,000	50,600	5,990,000	84,900	서울시 노원구 섬밭로 201(하계동) (☎ 02-976-7252)
	중계 3	2,619	25	20	20	0	38	1,510,000	37,200	4,510,000	63,300	서울시 노원구 노원로 331(중계동) (☎ 02-949-2714~5)
			32	24	20	4	22	1,970,000	48,400	5,860,000	82,300	
			39	20	20	0	16	2,400,000	59,600	7,120,000	100,100	
	공릉 1	1,395	24	80	80	0	10	1,640,000	36,800	4,900,000	61,900	서울시 노원구 동일로 1127(공릉동) (☎ 02-974-8290~1)
			29	10	10	0	1	2,010,000	45,400	6,010,000	75,900	
	월계 사슴1	1,372	24	58	50	8	30	1,600,000	35,900	4,770,000	60,200	서울시 노원구 월계로 372(월계동) (☎ 02-978-8060~1)
			30	2	0	2	19	2,010,000	45,400	5,010,000	75,900	
	상계 마들	170	33	30	30	0	3	2,310,000	46,700	7,160,000	81,800	서울시 노원구 덕릉로 70가길 101 (☎ 02-935-4091)
	마포	성산	1,807	25	24	20	4	22	1,520,000	37,500	4,530,000	63,200
32				30	30	0	5	1,980,000	48,800	5,900,000	82,200	
39				40	40	0	0	2,410,000	59,500	7,170,000	100,000	

분구 번호	단지명	단지 규모 (호)	전용 면적 (㎡)	예비입주자 모집호수			기 존 대 기 자	임대가격(원)				주소 (연락처)
				계	일 반	무 장 애		수급자 기준		수급자 이외의 기준		
								임 대 보 조 금	월 임 대 료	임 대 보 조 금	월 임 대 료	
중랑	면목	905	32	10	10	0	12	1,990,000	49,100	5,930,000	82,900	서울시 중랑구 용마산로 228(면목동) (☎ 02-438-1942~3)
			39	22	20	2	5	2,420,000	60,000	7,210,000	100,800	
	신내 10	906	24	26	20	6	42	1,700,000	36,500	5,060,000	59,400	서울시 중랑구 신내로 115(신내동) (☎ 02-3421-4037~8)
			30	4	0	4	19	2,160,000	44,900	6,400,000	75,100	
			39	2	0	2	34	2,810,000	58,500	8,330,000	97,700	
	신내 12	1,000	27	46	40	6	19	1,940,000	40,400	5,760,000	67,600	서울시 중랑구 봉화산로 153(상봉동) (☎ 02-3421-2000~1)
강남	대치 1	1,623	25	40	40	0	27	1,560,000	38,400	4,700,000	64,900	서울시 강남구 개포로 109길5(개포동) (☎ 02-451-4000~1)
			33	10	10	0	9	2,050,000	50,200	6,120,000	84,600	
	수서 1-1	984	25	84	80	4	0	1,580,000	38,800	4,720,000	65,300	서울시 강남구 양재대로 55길10(일원동) (☎ 02-451-5266~7)
	수서 6	1,508	23	160	160	0	0	1,480,000	36,000	4,390,000	60,700	서울시 강남구 광평로 56길11(수서동) (☎ 02-459-3774~5)
			29	20	20	0	0	1,840,000	45,300	5,510,000	76,100	
	세곡 2-3	86	49	5	5	0	1	4,220,000	84,100	34,340,000	249,000	서울시 강남구 밤고개로 21길 25(자곡동) (☎ 02-3412-3866)
	세곡 2-4	70	49	5	5	0	0	4,220,000	84,100	34,180,000	245,100	서울시 강남구 자곡로 260(자곡동) (☎ 02-3412-3866)
	강서	가양 4	1,998	24	50	50	0	65	1,520,000	37,600	4,520,000	63,300
가양 5		2,411	24	20	20	0	89	1,520,000	37,900	4,520,000	63,300	서울시 강서구 양천로 57길36(가양동) (☎ 02-2668-7000~1)
			41	5	5	0	19	2,520,000	62,500	7,490,000	104,900	

구별	단지명	단지 규모 (호)	전용 면적 (㎡)	예비입주자 모집호수			기존 대기자	임대가격(원)				주소 (연락처)
				계	일반	무장애		수급자 기준		수급자 이외의 기준		
								임대보증금	월임대료	임대보증금	월임대료	
강서	방화 2-1	1,563	24	54	50	4	51	1,540,000	36,500	4,600,000	61,300	서울시 강서구 방화대로 48길 40(방화동) (☎ 02-2666-1910~1)
			30	4	0	4	20	1,970,000	46,700	5,860,000	78,200	
	방화 6	404	24	24	20	4	18	1,540,000	36,500	4,600,000	61,300	서울시 강서구 금강화로 23길 25(방화동) (☎ 02-2663-2341~2)
	방화 11	1,065	24	40	40	0	50	1,560,000	37,000	4,670,000	62,200	서울시 강서구 개화동로 21길 4(방화동) (☎ 02-2664-4424)
			30	2	0	2	18	1,980,000	46,900	5,890,000	78,500	
	합계				991	935	56					

- ※ 위 임대조건외 임대보증금 및 월임대료는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기준이며, 예비입주자로 선정된 고객께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는 시점에 당해 주택의 임대조건이 변경된 때에는 변경된 임대조건으로 계약하셔야 합니다.
- ※ 중계3단지 LH와 서울주택도시공사(SH) 단지명이 동일하므로 신청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 기존 대기자수는 신청 시 참고사항에 불과하며, 공기공급 등으로 수시로 증감되는 수치입니다.
- ※ 임대조건외의 수급자 기준은 국민기초생활법상의 수급자(생계·의료), 저소득 국가유공자, 일본군위안부, 보호대상 한부모가족 등으로서 증명서 및 확인서 제출 등이 가능한 사람입니다.
- ※ 하계5단지, 상계마들은 5층 아파트로 엘리베이터가 없으니 신청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 무장애주택은 1층에 배정되어 있으며, 장애인 또는 65세 이상 고령자가 신청 가능하며, 무장애주택 탈락자는 일반 공급 신청자로 전환됩니다.
- ※ 계약금은 임대보증금 20%(납부 후 계약), 잔금 80%(입주기간 내에 납부하여야 함)입니다.

◎ 서울주택도시공사 전용면적별 신청 가능한 가구원수 기준

전용면적	24~29㎡ 미만	29㎡이상~39㎡미만	39㎡이상~49㎡미만	49㎡이상
가구원수	1~2인 가구	3인 가구	4인 가구	5인 가구 이상

※ 현재 입주자와의 형평성에 맞추어 29㎡ 이상부터 3인 가구 신청

입주자 모집공고일(2018.03.16.) 현재 서울특별시에서 거주하는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 영구임대주택 입주자 자격에 해당되며 아래의 소득 및 자산보유 기준을 충족하는 사람

(다만 불법양도·전대자 재입주 금지 규정 신설에 따라 신청자의 세대구성원중에 과거에 공공임대주택 임차인으로서 불법양도·전대 행위로 적발된 후 4년이 경과되지 않은 자가 있는 경우 신청자는 공공임대주택 입주자로 선정 불가)

◎ 일반공급 * 공공주택특별법시행규칙 별표3 제1호 일반공급 1순위

구분	입주자격
1 순 위	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7조제1항제1호에 따른 생계급여 수급자 또는 같은 항 제3호에 따른 의료급여 수급자 (이하 수급자라 함)
	나.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해당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태아를 포함한 가구원 수가 4명 이상인 세대는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으로 한다.)의 70퍼센트 이하이고 영구임대주택의 자산요건을 충족한 사람 1)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 또는 그 유족 2)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보훈보상대상자 또는 그 유족 3) 「5·18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5·18민주유공자 또는 그 유족 4)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특수임무유공자 또는 그 유족 5) 「참전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참전유공자
	다. 「일제하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생활안정지원 및 기념사업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라 여성가족부장관에게 등록한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라. 「한부모가족지원법 시행규칙」 제3조에 따라 여성가족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지원대상 한부모가족 * 세대주 및 세대원 요건 제외
	마.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북한이탈주민으로서 해당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70퍼센트 이하이고 영구임대주택의 자산요건을 충족한 사람
	바.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장애인등록증이 교부된 사람(지적장애인·정신장애인 및 제3급 이상의 뇌병변장애인의 경우에는 그 배우자를 포함)으로서 해당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70퍼센트 이하이고 영구임대주택의 자산요건을 충족한 사람
	사. 65세 이상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을 부양(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세대원으로 등재되어 있는 경우로 한정)하는 사람으로서 가목의 수급자 선정기준의 소득인정액 이하인 사람 * 피부양자의 배우자도 무주택이어야 함
	아. 「아동복지법」 제16조에 따라 아동복지시설에서 퇴소하는 사람 중 아동복지시설의 장이 추천하는 사람으로서 해당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70퍼센트 이하이고 영구임대주택의 자산요건을 충족한 사람 * 세대주 및 세대원 요건 제외
	자. 65세 이상인 사람으로서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수급권자 또는 같은 조 제10호에 따른 차상위계층에 해당하는 사람

◎ 신청자별 자격 검증 대상(이후 '세대구성원'을 말함)

신청자	자격 검증 대상
세대주 신청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신청자 • 신청자와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상 세대주의 배우자 및 세대주의 직계존·비속
세대원 신청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신청자 및 세대주 • 신청자와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상 세대주의 배우자 및 세대주의 직계존·비속 • 신청자와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상 신청자의 배우자 및 신청자의 직계존·비속

- ※ 단, 신청자의 배우자가 세대 분리된 경우 세대 분리된 배우자 및 배우자와 동일 세대를 이루고 있는 신청자의 직계·존비속은 자격 검증 대상(세대구성원)으로 추가됨
- ※ 세대주의 직계존비속에 해당하지 않는 세대주의 형제·자매, 사위, 며느리, 장인, 장모, 시부모, 동거인 등은 세대주의 등본에 함께 등재된 경우라도 세대원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청약 자격이 없습니다.
- 보장시설 입소자(동거인)로서 입주신청시 보장시설장의 「퇴소사실확인서 또는 퇴소예정확인서」를 제출한 경우에 한하여 세대원으로 의제하여 신청할 수 있음

◎ 입주자격 검증

영구임대주택 입주자격은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 일정 소득 및 자산 보유 기준을 충족하여야 하며, 입주를 신청하신 신청자와 해당 세대구성원 전원은 국토교통부 주택소유 확인시스템을 통하여 주택 소유 여부를, 보건복지부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하여 소득과 자산을 조회하여 입주자격 충족 여부를 검증 후 입주자로 선정합니다.

◎ 소득 및 자산보유 세부기준

구분	소득 및 자산보유 기준			
소득	가구원수	월평균 소득 100%	월평균 소득 70%	월평균 소득 50%
	3인이하가구	5,002,590원 이하	3,501,810원 이하	2,501,290원 이하
	4인, 5인 가구	5,846,903원 이하	4,092,830원 이하	2,923,450원 이하
	6인, 7인 가구 ~	가구원수별 소득기준 적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가구원수는 해당세대에 속한 자(세대구성원) 전원을 말함 (임신중인 경우 태아 포함) * 월평균소득액은 세전금액으로서 해당세대의 월평균소득액을 모두 합산한 금액임 * 가구원수별로 월평균소득기준을 다르게 적용함 			

구분		소득 및 자산보유 기준
자산	총 자산 가액	• 세대구성원 전원이 보유하고 있는 총 자산(부동산, 자동차, 금융자산(부채반영), 일반자산) 가액 합산 기준 17,800만원 이하
	자동차 가액	• 세대구성원 전원이 보유하고 있는 개별 자동차가액 2,545만원 이하 * 자동차는 총 자산 평가와 별도로 추가 관리됨

◎ 소득 · 자산 확인방법

소득 · 자산 정보는 보건복지부에서 운영하는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하여 제공되며, 이는 국가 또는 공공기관이 보유한 공적 소득 자료입니다.

- 소득 및 자산액은 해당세대(세대구성원 전원)의 합계액을 말합니다.
-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해 조회되지 않아 소명이 필요한 경우 관련 증빙서류를 제출받아 소명 처리합니다.

4

예비입주자 선정방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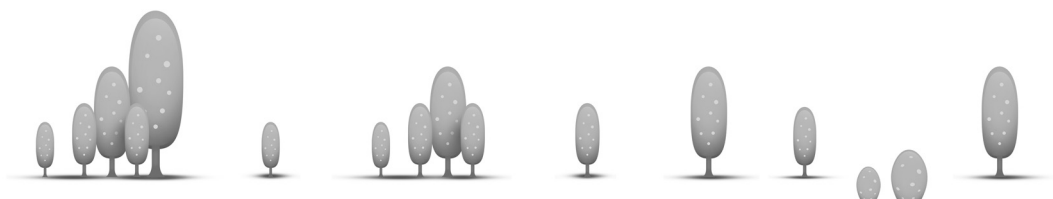
◎ 예비입주자 선정방법 : 입주대상자 선정(배점) 기준표에 의한 합산 점수가 높은 사람 순

- 동일 점수일 때 선정 순서 : ① 서울시 전입일자가 오래된 사람 ② 신청자 연령이 높은 사람

◎ 입주대상자 선정(배점) 기준표 (「서울특별시 공공임대주택 운영 및 관리규칙」제4조제1항)

구분	배점		배점기준 (대상자)
	100점		
1. 신청자의 서울시 거주기간 (30점)	1년 미만	22	▶ 모집일로부터 연속된 거주기간 (주민등록 말소의 경우는 재등록 이후부터 기간)
	1~5년 미만	24	
	5~10년 미만	26	
	10~15년 미만	28	
	15년 이상	30	
2. 신청자 연령 (25점)	40세 미만	19	
	40~50세 미만	21	
	50~60세 미만	23	
	60세 이상	25	

구 분		배점	배점기준 (대상자)	
		100점		
3. 세대원수 (30점)	1~2인	24	▶ 주민등록표에 등재되어 생계를 같이 하여야 함 • 신청인 본인, 배우자, 신청인 및 배우자의 직계혈족, 직계비속의 배우자, 신청인 및 배우자의 미혼·미성년 형제자매	
	3인	26		
	4인	28		
	5인 이상	30		
4. 가 점(15점) ※ 신청자 기준으로 하되, 장애인이 세대주 또는 세대원인 경우에도 포함	15 (유형 3가지)	15	▶ 기초생활수급자로서 아래 유형에 해당하는 수 • 국가유공자, 일본군위안부피해자, 한부모가족 • 북한이탈주민, 1~3급 장애인(세대원 포함) • 65세 이상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 3년 이상 부양자 • 아동복지시설 퇴소자(퇴소예정 6개월 전부터 23세까지), 소년소녀가장 • 미성년자녀 3인 이상 부양자 • 철거지역 이주자, 재해 이주자, 위험건물철거 이주자 • 혼인기간 5년 이내이고 그 기간에 출산(임신 중이거나 입양한 자 포함)하여 미성년 자녀가 있는 사람	
	13 (유형 2가지)	13		
	11 (유형 1가지)	11		
	8 (유형 1가지)	8		▶ 기초생활수급자로서 • 4~6급 장애인(세대원 포함) • 10년 이상 장기복무 전역한 제대군인
	7	7		▶ 기초생활수급자 ▶ 비수급자로서 • 국가유공자,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한부모가족 • 북한이탈주민, 1~3급 장애인(세대원 포함) • 65세 이상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 3년 이상 부양자 • 아동복지시설 퇴소자(퇴소예정 6개월 전부터 23세까지), 소년소녀가장 • 미성년자녀 3인 이상 부양자 • 철거지역 이주자, 재해 이주자, 위험건물철거 이주자 • 혼인기간 5년 이내이고 그 기간에 출산(임신 중이거나 입양한 자 포함)하여 미성년 자녀가 있는 사람
4	4	▶ 비수급자로서 • 4~6급 장애인(세대주 및 세대원 포함)		



◎ 신청시 제출서류

구분	구비서류
본인 직접 신청할 때	① 본인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만 인정) ② 본인 도장(서명으로 대체 가능)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이 대리 신청할 때	① 본인(신청자) 및 배우자의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만 인정) ② 본인(신청자) 도장 ③ 본인(신청자)과의 관계 입증서류(가족관계증명서 등)
기타 대리인이 대리 신청할 때	① (인감증명방식) 본인(신청자)의 인감증명서, 위임장(인감증명서상의 도장일 것), 본인(신청자)의 인감도장 ② (본인서명방식) 본인(신청자)의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본인(신청자)이 자필 서명한 위임장(본인서명사실확인서상의 서명일 것), * 수임인 서명란에 대리인 성명을 반드시 명기 ③ 공통 : 본인(신청자) 및 대리인의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만 인정)

※ 신청접수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신청 이후에는 취소 또는 정정이 불가합니다.

구비서류	비 고	부수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동의서	<ul style="list-style-type: none"> 대상자 : 세대구성원 전원 만14세 미만의 세대구성원은 보호자(법정대리인)가 서명가능 (동의방법) 공고시에 첨부된 동의서에 세대구성원 전원이 서명 ※ (주의) 동의서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 임대주택 입주자 신청·접수가 거부됨 	1통
금융정보 등 (금융·신용·보험 정보)제공 동의서		1통
70 배 자산 보유 사실확인서	<ul style="list-style-type: none"> 공적자료로 확인이 불가능한 임차보증금, 분양권, 임대보증금 내역을 기재하고 신청자가 서명하여 관련 증빙을 첨부하여 제출함 * 임차보증금 및 임대보증금 : 임대차계약서 사본(확정일자가 표시되어야 함) * 분양권 : 분양계약서 사본 및 분양대금 납부확인원 ※ 신고 누락된 자산이 추후 확인되어 자산 보유 기준을 충족하지 않은 경우 계약 해지 처리될 수 있음 	1통
영구임대주택 공급신청서	<ul style="list-style-type: none"> 거주지 주민센터에 비치 (홈페이지에 게재된 모집공고에서 인쇄하여 사용 가능) 	1통
무주택 서약서	<ul style="list-style-type: none"> 거주지 주민센터에 비치 	1통

구비서류	비 고	부수
주민등록표등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당해지역 거주기간이 전체 표시되어야 함 • 반드시 세대구성 사유 및 일자, 세대주와의 관계, 세대주 및 세대구성원 전원의 주민등록번호, 전입일/변동일 등이 전부 표기되도록 발급 ※ 배우자와 주민등록표상 세대 분리되어 있는 경우에는 배우자 주민등록표등본 1통 추가 제출 ※ 입주자 모집공고일 이후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의 세대주'와 주민등록표 등본이 분리된 신청자는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의 세대주'의 주민등록표 등본 1통 추가 제출 	1통
주민등록표초본	<p>〈 해당자만 제출 〉</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반드시 과거 주소변동사항, 세대주 성명 및 관계 등이 전부 표기토록 발급 • 입주자 모집공고일 이후 주소 또는 세대주 변동이 있는 세대구성원 (신청자 포함) • 당해지역 거주기간이 전체 표시되어야 함. 	1통
가족관계증명서	<p>〈 해당자만 제출 〉</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민등록표등본에서 배우자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 (세대분리, 미혼, 이혼, 사별 등) ※ 배우자가 외국인인 경우 배우자 외국인등록증 등 사본 추가 • 65세 이상 직계존속 부양자로서 수급자 선정기준의 소득인정액 이하인 자중 피부양자의 배우자가 동일 주민등록등본 상 확인되지 않을 경우 “피부양자의 가족관계증명서” 	1통
신청자격 증명서	<p>〈 해당자만 제출 〉</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행정기관, 시설장 등이 발행하는 증명서 또는 사본 (아래 참고) 	

※ 신청자격 증명서

대상자	제출서류	발급처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지원대상 한부모가족, 장애인	생계·의료급여수급자증명서, 한부모가족 증명서, 장애인증명서	주민센터
국가유공자(보훈보상대상자, 5·18민주유공자, 특수임무유공자 포함) 또는 그 유족, 참전유공자	국가유공자 확인원 등 (영구임대주택 지원대상자 증명서)	국가보훈처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결정통지서 사본	여성가족부

대상자	제출서류	발급처
북한이탈주민	북한이탈주민등록확인서	시·군·구청
만65세 이상의 직계존속(배우자 직계존속 포함)을 부양하는 자로서 생계·의료급여수급자 선정기준의 소득인정액 이하인 사람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선정기준의 소득인정액 이하임을 증명하는 서류	주민센터
아동복지시설에서 퇴소하는 사람	추천서, 아동복지시설 신고증 사본	아동복지시설
만65세 이상 수급권자 또는 차상위계층	수급자(차상위) 증명서	주민센터

◎ 금융자산 조회 안내

「공공주택 입주자 보유 자산 업무처리지침」의 시행(2016.12.30)에 따라 영구임대주택 입주신청자의 세대구성원 전원은 금융자산을 포함한 총자산가액을 조회하기 위하여 입주자 신청시 '금융정보 등 제공 동의서'를 반드시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하지 아니할 경우 신청이 불가합니다.

구분	안내사항	
동의서 수집 사유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해 금융자산 정보 조회시 금융기관 제출용	
동의서 서명 대상	세대구성원 전원 서명	
서명	정보 제공 동의	금융기관에 세대구성원 전원이 각각 금융정보 제공을 동의
	정보 제공 사실 미통보	금융기관의 금융정보 제공 사실을 통보하지 아니는 것을 동의
동의서 유효기간 등	제출일부터 6개월 이내 금융정보 조회시 유효	

* 금융정보 제공 사실은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0조의2(명의인에게의 통보에 소요되는 비용의 범위)에 따라 금융거래 통보비용을 지급하여야 하나 **'정보 제공 사실 미통보' 서명 시** 금융정보 제공 사실을 통보 생략하여 해당 비용을 발생하지 않음

● **확인방법**

세대구성원 전원을 대상으로 국가 및 지자체가 보유하고 있는 주택관련 공적자료를 조회하여 주택소유 여부를 확인

● **주택의 범위**

건물등기부등본, 건축물대장등본, 과세자료 등에 등재된 전국 소재 주택

(* 주택의 공유지분이나 주택용도가 있는 복합건물도 주택으로 봄)

● **주택의 소유 기준일(제1호와 제2호의 일자가 상이할 경우, 먼저 처리된 날을 기준으로 함)**

1. 건물등기부등본 : 등기접수일 (미등기 주택인 경우에는 건축물대장등본상의 처리일)

2. 건축물대장등본 : 처리일

3. 기타 주택소유 여부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시장 또는 군수 등 공공기관이 인정하는 날

● **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보지 않는 경우 (무주택으로 인정하는 경우)**

※ 무주택으로 인정되더라도 자산(부동산) 가액에는 포함하여 산정됨.

① 상속으로 인하여 주택의 공유지분을 취득한 사실이 판명되어 사업주체로부터 부적격자로 통보받은 날부터 3월 이내에 그 공유지분을 처분한 경우

② 도시지역이 아닌 지역 또는 면의 행정구역(수도권은 제외)에 건축되어 있는 주택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의 소유자가 당해주택건설지역에 거주(상속으로 주택을 취득한 경우에는 피상속인이 거주한 것을 상속인이 거주한 것으로 봄)하다가 다른 주택건설지역으로 이주한 경우

가. 사용승인 후 20년이 경과된 단독주택

나. 85㎡ 이하인 단독주택

다. 소유자의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최초 등록기준지에 건축되어 있는 주택으로서 직계존속 또는 배우자로부터 상속 등에 의하여 이전받은 단독주택

③ 개인주택사업자가 분양을 목적으로 주택을 건설하여 이를 분양완료 하였거나 부적격자로 통보받은 날부터 3월 이내에 이를 처분한 경우

④ 세무서에 사업자로 등록한 개인사업자가 그 소속근로자의 숙소로 사용하기 위하여 주택법의 규정에 의하여 주택을 건설하여 소유하고 있거나 사업주체가 정부시책의 일환으로 근로자에게 공급할 목적으로 사업계획승인을 얻어 건설한 주택을 공급받아 소유하고 있는 경우

⑤ 20㎡ 이하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단, 2호 또는 2세대 이상의 주택을 소유한 자 제외)

⑥ 공부상에는 주택으로 등재되어 있으나 폐가, 멸실, 타용도로 사용되고 있는 경우로서 부적격자로 통보받은 날부터 3월 이내에 이를 멸실 또는 실제용도로 공부를 정리한 경우

⑦ 무허가 건물[종전의 「건축법」(법률 제7696호 건축법 일부 개정 법률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 제8조 및 제9조에 따라 건축허가 또는 건축신고 없이 건축한 건물을 말한다]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소유자가 해당 건물이 건축 당시의 법령에 따른 적법한 건물임을 증명하여야 함)

* 소명방법 : 해당 주택이 <2006.5.8 이전 건축법 제8조에 따라 도시지역 이외의 지역 등에서 건축허가 또는 신고 없이 건축된 연면적 200㎡ 미만이거나 2층 이하의 건물>로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3조제8호에 해당하는지를 확인하는 내용의 민원 회신문을 해당 지자체(시·군·자치구)로부터 받아서 제출

[주의] 당해주택 입주자는 정부정책, 관계법령 등의 변경에 따라 소득수준·자산보유 등 강화된 입주자격 및 재계약 기준이 적용되므로 총자산 또는 자동차가 입주기준 불충족 시 재계약이 거절됩니다.

구분	유의사항
임대 대상 및 조건	<ul style="list-style-type: none"> 이 주택의 임대차 계약기간은 2년이며, 계속 거주를 희망하는 경우에는 관계법령에서 정한 입주자격을 충족하는 자에 한하여 2년 단위로 계약을 갱신할 수 있습니다. 계속 거주를 희망하여 계약 갱신을 요청하는 임차인은 무주택세대구성원이어야 합니다. 공고된 임대조건은 최초 임대차계약기간 동안 입주자격을 충족하는 자에게 적용되는 금액이며, 입주 기간 중 관계법령이 정한 범위내에서 임대보증금 및 월 임대료가 인상됩니다. 임대보증금과 월임대료는 평형 및 층에 따라 표시된 금액과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각 단지별 동·호 배정은 전용면적 기준으로 무작위 전산추첨에 따릅니다. 신청접수 및 계약체결 전 현장여건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주택의 정확한 입주 시기는 추후 개별 통보합니다. 이 주택에 설치된 발코니는 주택공급면적에서 제외된 비주거공간으로 샤시 설치에 따라 내·외부의 온도 및 습도차이로 결로 현상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환기 등 예방조치를 취하여야 합니다.
신청 자격	<ul style="list-style-type: none"> 이 주택의 계약자(세대구성원 전원 포함)는 입주자 모집공고일로부터 임대차계약 종료일까지 무주택이어야 합니다. 입주대상자로 선정된 자가 주택 소유 등에 대한 전산검색결과 부적격자로 판명된 경우에는 재확인 기간(소명기간)내에 객관적인 증명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기한 내에 증명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한 자는 부적격 사유에 대하여 이의가 없는 것으로 간주되어 입주대상자에서 제외됩니다. 태아를 자녀로 인정받아 입주예정자로 선정된 자는 입주하기 전에 입주지정기간 개시일 이후 발급 받은 임신 또는 출산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관련서류 미제출 또는 허위임신·불법낙태 등의 사실이 판명되는 때에는 공급이 취소됩니다. 주택소유여부 확인방법 및 판정기준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2조, 53조”에 따릅니다.
신청 서류	<ul style="list-style-type: none"> 1세대(세대구성원 전원) 1주택 신청을 원칙으로 하며, 중복 신청할 경우 전부 무효 처리됩니다. 다른 기관에서 발급한 서류는 직인이 날인된 원본을 제출해야 하며, 주민등록표등본 등 신청시 제출하는 서류는 입주자 모집공고일 이후 발행된 것이어야 합니다. 신청은 본인, 배우자만 가능하며, 불가피한 사유로 대리신청을 할 경우에는 위임장, 본인 인감증명서 및 본인 인감도장 등을 추가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계약체결 후라도 제출한 서류가 허위, 위조 또는 정부의 전산자료 등에 의하여 사실과 다르게 판명될 경우에는 계약이 취소됩니다. 신청 이후에는 취소나 정정이 불가능하며, 신청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습니다.

구분	유의사항
입주 대상자 결정 및 계약 안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영구임대주택 당첨 계약안내문을 수령하였어도 영구임대주택 입주자격을 상실(수급자 등에서 제외)하거나, 영구임대주택 입주대상자 선정기준표에 의한 배점(세대원 수, 가점 등)이 상이할 경우 (신청시 가점과 계약시 가점이 같아야 함) 계약체결이 불가하며 당첨이 취소됩니다. • 입주대상 선정이후 연락처(주소, 전화번호)가 변경될 경우, 즉시 그 내용을 우리공사에 통보하여야 하며, 우편(계약안내문 등) 미수령으로 인한 미계약의 경우 본인과실로 인해 당첨이 취소됩니다. • 계약체결 후 입주하지 아니하고 계약을 해지하거나 입주지정기간 종료일 이후 3개월 이내에 입주하지 않고 임대차계약이 해지될 경우 소정의 위약금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기타 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부정한 방법으로 임대주택을 임대받거나 받게한 자 또는 임대주택의 임차권을 양도하거나 임대주택을 전대한 자 및 이를 알선한 자에 대하여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 입주시 관리운영에 필요한 자금을 미리 확보하기 위하여 일정금액의 관리비예치금을 1회 부과하며, 퇴거할 때 반환됩니다. • 입주시 잔금 및 관리비예치금의 납부, 이사짐의 도착, 입주자가 계약자 본인임을 확인한 후 열쇠를 드리며, 입주지정기간 종료일 이후에 입주하는 경우에는 거주여부에 관계없이 입주지정기간 종료일 다음날부터 관리비 및 잔금연체료가 부과됩니다. • 현재 임대주택에 거주하고 있는 사람은 당첨된 주택에 입주하기 전에 기존 임대주택을 명도하여야 합니다. • 기타 이 공고문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공공주택특별법」 및 「주택공급에관한규칙」 등 관계법령에 따릅니다.



◎ 소득·자산 산정방법(공공주택 입주자 보유자산 관련 업무처리기준)

구분	산정방법
소득	<p>사회보장정보시스템에서 제공되는 국가 또는 공공기관이 보유한 공적 소득자료를 근거로 세대구성원 전원의 아래의 12가지 소득을 합산하여 월평균 소득을 산정함</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근로소득 (상시근로소득, 일용근로소득, 자활근로소득, 공공일자리소득) • 사업소득 (농업소득, 임업소득, 어업소득, 기타사업소득) • 재산소득 (임대소득, 이자소득, 연금소득) • 기타소득 (공적이전소득)
부동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해 조사된 세대구성원 전원이 소유하고 있는 모든 부동산 가액 * 토지 : 소유면적 × 개별공시지가, 건축물 : 공시가격 • 건축물가액은 건축물의 공시가격으로 함 - 건축물가액이 공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지자체장이 결정한 시가표준액 적용 • 토지가액은 지목에 상관없이 해당세대가 소유하고 있는 모든 토지면적에 개별공시지가를 곱한 금액 단, 건축물가액이나 토지가액을 산출하는 경우 다음 항목에 해당하는 부동산은 제외함 - 「농지법」제2조제1호에 따른 농지로서 같은 법 제49조에 따라 관할 시·군·구·읍·면장이 관리하는 농지원부에 동일한 농업인과 소유자로 등재된 경우 - 「초지법」제2조제1호에 따른 초지로서 소유자가 「축산업」제22조에 따른 축산업 허가를 받은 사람이며, 축산업 허가증의 사업장 소재지와 동일한 주소인 경우 - 공부상 도로, 구거, 하천 등 공공용지로 사용되고 있는 경우 - 종중소유 토지(건축물을 포함한다) 또는 문화재 건립 된 토지 등 해당 부동산의 사용, 처분이 금지되거나 현저히 제한 받는 경우. 이 경우 입주(예정)자가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입증하여야 함
총자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해 조사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차량기준가액. • 총자산가액 산출시 적용하는 자동차 가액은 해당세대가 보유한 자동차의 가액을 모두 합하여 산출하고 아래의 경우를 제외함. - 「장애인 복지법」 제39조에 따른 장애인사용 자동차 - 「국가유공자 등 예우와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로서 상이등급 1급 내지 7급에 해당하는 자의 보철용 차량 • 자동차 가액 산출 시 「대기환경보전법」제58조제3항에 따른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보조를 받고 구입한 저공해자동차의 경우 자동차가액에서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보조금을 제외한 금액으로 한다.
금융자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보통예금, 저축예금, 자유저축예금, 외화예금 등 요구불예금 : 최근 3개월 이내의 평균 잔액 • 정기예금, 정기적금, 정기저축 등 저축성예금 : 예금의 잔액 또는 총납입액 • 주식, 수익증권, 출자금, 출자지분, 부동산(연금)신탁 : 최종 시세가액. 이 경우 비상장주식의 평가에 관하여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4조제1항을 준용한다. • 채권, 어음, 수표, 채무증서, 신주인수권 증서, 양도성예금증서 : 액면가액 • 연금저축 : 정기적으로 지급된 금액 또는 최종 잔액 • 보험증권 : 해약하는 경우 지급받게 될 환급금 • 연금보험 : 해약하는 경우 지급받게 될 환급금 또는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금액

구분	산정방법
<p style="text-align: center;">총 자산</p> <p style="text-align: center;">일 반 자 산</p> <p style="text-align: center;">부 채</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방세법」 제104조제4호 및 제5호에 따른 항공기 및 선박 : 「지방세법」 제4조제2항에 따른 시가표준액 등을 고려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가액 • 주택·상가 등에 대한 임차보증금(전세금을 포함한다) : 임대차계약서상의 보증금 및 전세금 • 「지방세법」 제6조제11호에 따른 입목 : 「지방세법 시행령」 제4조제1항제5호에 따른 시가표준액 • 「지방세법」 제6조제13호에 따른 어업권 : 「지방세법 시행령」 제4조제1항제8호에 따른 시가표준액 • 「지방세법」 제6조제14호부터 제18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회원권 : 「지방세법 시행령」 제4조제1항제9호에 따른 시가표준액 • 「소득세법」 제89조제2항에 따른 조합원입주권 :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금액 가. 청산금을 납부한 경우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8조에 따른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정해진 가격(이하 “기존건물평가액”이라 한다)과 납부한 청산금을 합한 금액 나. 청산금을 지급받은 경우 : 기존건물평가액에서 지급받은 청산금을 뺀 금액 • 건물이 완성되는 때에 그 건물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를 취득할 수 있는 권리 (위 조합원입주권은 제외) : 조사일 현재까지 납부한 금액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금융회사등으로부터 받은 대출금 • 공공기관 대출금 • 법에 근거한 공제회 대출금 • 법원에 의하여(판결문, 화해·조정조서) 확인된 사채 • 임대보증금(단, 해당 부동산가액 이하의 금액만 반영)
<p style="text-align: center;">자동차</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산출한 자동차가액을 포함한 총자산가액 해당기준을 충족하더라도 별도의 자동차가액 기준을 충족하여야 함. 이때 자동차는 「자동차 관리법」 시행규칙 제2조에서 정한 비영업용 승용자동차에 한하여 산출하고, 해당세대가 2대 이상의 자동차를 소유한 경우에는 각각의 자동차가액 중 높은 차량가액을 기준으로 하며 아래의 경우를 제외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장애인 복지법」 제39조에 따른 장애인사용 자동차 - 「국가유공자 등 예우와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로서 상이등급 1급 내지 7급에 해당하는 자의 보철용 차량 • 자동차 가액 산출 시 「대기환경보전법」 제58조제3항에 따른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보조를 받고 구입한 저공해자동차의 경우 자동차가액에서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보조금을 제외한 금액으로 한다.

◎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한 소득항목 설명 및 소득자료 출처

구분	항목	소득항목 설명	소득자료 출처
근로소득	상시 근로소득	상시 고용되어 월정액 급여를 지급받는 자의 근로소득	- 건강보험 보수월액 - 국민연금 표준보수월액 (소득신고) - 장애인고용공단자료 (사업주의 고용장려금 신고자료 /고용부담금 신고자료 : 근로소득) - 국세청종합소득(근로소득)
	일용 근로소득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근로계약에 따라 일정한 고용주에게 3개월 이상 계속하여 고용되지 아니한 자 • 건설공사종사자(동일한 고용주에게 계속하여 1년 이상 고용된 자 제외) • 하역(항만)작업 종사자(통상 근로를 제공한 날에 급여를 지급받지 아니하고 정기적으로 근로대가를 받는 자) 	- 국세청 일용근로소득 지급 명세서 - 고용노동부 고용·산재보험 근로내용 확인신고서
	자활 근로소득	자활근로, 자활공공근로, 자활공동체사업, 적응훈련, 직업훈련 등 자활급여의 일환으로 사업에 참여하여 근로를 제공하고 받는 급여 및 수당	- 자활근로자 근로내역
	공공 일자리소득	노인 일자리사업, 장애인일자리사업, 공공근로 등에 참여한 대가로 얻는 소득	- 노동부 '일모아' 근로내역
사업소득	농업소득	경종업(耕種業), 과수·원예업, 양잠업, 종묘업, 특수작물생산업, 가축의 사육업, 종축업 또는 부화업 등과 이에 부수하는 업무에서 얻는 소득 * 농업소득 = 국세청 종합소득 + 농업직불금	- 국세청 종합소득(사업소득) - 농림수산물부 농지원부 - 농림수산물부 농업직불금
	임업소득	영림업·임산물생산업 또는 야생조수사육업과 이에 부수하는 업무에서 얻는 소득	- 국세청 종합소득(사업소득)
	어업소득	어업과 이에 부수하는 업무에서 얻는 소득	- 국세청 종합소득(사업소득)
	기타 사업소득	도매업·소매업, 제조업, 기타 사업에서 얻는 소득	- 국세청 종합소득(사업소득) - 사업자등록증
재산소득	임대소득	부동산·동산·권리 기타 재산의 대여로 발생하는 소득	- 국세청 종합소득
	이자소득	예금·주식·채권의 이자와 배당 또는 할인에 의하여 발생하는 소득	- 국세청 종합소득
	연금소득	민간 연금보험, 연금저축 등에 의해 정기적으로 발생하는 소득	- 금융정보 조회결과
기타 소득	공적이전 소득 각종 법령의 규정에 의해 지급되는 각종 수당, 연금, 급여, 기타금품(일시금으로 받는 금품은 재산으로 산정)	- 국민연금급여, 사학퇴직연금급여, 공무원퇴직연금급여, 국방부퇴직, 연금급여, 별정우체국연금, 한국고용정보원 실업급여, 근로복지공단 산재보험급여, 보훈처 보훈대상자명예수당, 보훈처 보훈대상자보상급여 등	

구분	항목	소득항목 설명	소득자료 출처
일반자산	토지, 건축물 및 주택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토지(지방세법 제104조제1호~3호) : 「지적법」에 따라 지적공부의 등록 대상이 되는 토지와 그 밖에 사용되고 있는 사실상의 토지 • 건물(건축법 제2조제1항제2호) : 토지에 정착하는 공작물 중 지붕과 기둥 또는 벽이 있는 것과 이에 딸린 시설물, 지하나 고가의 공작물에 설치하는 사무소·공연장·점포·차고·창고 등 • 시설물(지방세법 제6조제4호) : 토지에 정착하거나 지하 또는 다른 구조물에 설치하는 레저시설, 저장시설, 도크시설, 접안시설, 도관시설, 급·배수시설, 에너지 공급시설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시설(이에 딸린 시설을 포함한다) • 주택이란 세대의 구성원이 장기간 독립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는 구조로 된 건축물의 전부 또는 일부 및 그 부속 토지를 말하며, 단독주택과 공동주택으로 구분(토지와 건축물의 범위에서 주택은 제외) 	- 지방세정 자료
기타자산	임차보증금	주택, 상가 등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일정기간 임차하는 대가로 소유권자에게 예탁한 보증금 (전세보증금, 월세보증금, 상가보증금 등)	- 국토부 확정일자 정보 - 직권조사 등록
	선박·항공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선박 : 기선·범선·전마선 등 명칭과 관계없이 모든 배를 의미 • 항공기 : 사람이 탑승 조정하여 항공에 사용하는 비행기·비행선·활공기·회전익항공기 그밖에 이와 유사한 비행기구 	- 지방세정 자료
	입목재산	지상의 과수, 임목(林木), 죽목 등 입목(立木)재산	- 지방세정 자료
	회원권	골프회원권, 콘도미니엄회원권, 종합체육시설이용회원권, 승마회원권, 요트회원권	- 지방세정 자료
	조합원입주권	소득세법 제89조제2항에 따른 조합원입주권	- 지방세정 자료
	어업권	수산업법 또는 내수면어업법의 규정에 의한 면허어업에 대한 권리	- 지방세정 자료
	분양권	건물이 완성되는 때에 그 건물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를 취득할 수 있는 권리(위 조합원입주권은 제외) : 조사일 현재까지 납부한 금액	-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한 공적자료 또는 직권조사
금융자산	현금 또는 수표, 어음, 주식, 국·공채 등 유가증권		- 금융정보 조회결과
	예금, 적금, 부금, 보험 및 수익증권 등		
부채	금융기관 대출금		- 금융정보 조회결과
	금융기관 이외의 기관 대출금		
	법에 근거한 공제회 대출금		
	법원에 의하여 확인된 사채		-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한 공적자료 또는 직권조사
	임대보증금		
자동차	지방세법에 의한 자동차(제124조)로 승용자동차, 승합자동차, 화물자동차, 특수자동차, 이륜자동차	- 국토부 및 보험개발원	

2017년 영구임대주택 예비입주자 모집공고 단지별 당락 점수는 아래와 같습니다.
청약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단지명	전용면적(m ²)	공급수	당락점수	무장애
하계5단지	33	10	83	90
성산	25	30	90	
	32	22	88	
	39	20	92	
면목	25	12	90	88
	32	20	90	
	39	20	90	
중계3단지	25	36	86	86
	32	22	86	81
	39	22	88	92
대치1단지	25	50	88	
	33	10	90	
	39	7	94	92
수서1단지	25	32	88	88
	33	22	88	86
수서6단지	23	82	86	86
	39	10	92	
가양4단지	24	70	82	
	30	30	78	
	41	20	90	
가양5단지	24	70	84	
	30	30	84	
	41	5	92	

단지명	전용면적(㎡)	공급수	당락점수	무장애
방화2-1단지	24	44	84	
	30	32	80	
	39	22	77	
방화6단지	24	20	86	
	39	10	75	
방화11단지	24	46	82	83
	30	22	81	
	39	20	77	
공릉1단지	24	30	86	
	39	5	92	
월계사슴1단지	24	20	88	
	30	30	83	
	39	20	88	
신내10단지	24	32	86	88
	30	14	86	
신내12단지	27	32	88	88

10

문의처

- ◎ 서울특별시 관내 동 주민센터
- ◎ 서울주택도시공사 대표전화(콜센터) ☎ 1600-3456 (평일 09:00 ~ 18:00)

2018. 03. 16.

SH 서울주택도시공사 사장

M E M O

ISH 서울주택도시공사

06336 서울특별시 강남구 개포로 621(개포동 14-5)
www.i-sh.co.kr

콜센터 1600-3456